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18호 2024. 3. 22.(금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633호 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1
- 하동군 조례 제2634호 하동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8
- 하동군 조례 제2635호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4-4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기간연장 허가 고시 24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4-513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5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4-495호 공시송달공고 32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하 동 군 수 하 승



하동군 조례 제 2633 호

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하동군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운영자”란 하동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군수의 지휘를 받아 예술단을 원활히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감독 및 정기·수시공연을 연구·기획·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단원”이란 예술단의 일원으로서 공연연습 참가 및 정기·수시공연에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객원”이란 예술단의 일원이 아닌 자로서 예술단 공연에 협연을 위하여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개전형”이란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서류 및 면접으로 실시하는 전형을 말한다. 다만, 필요시 실기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특별전형”이란 서류심사로 실시하는 전형을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는 실기와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6. “정기공연”이란 군민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연을 말한다.

7. “수시공연”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요 문화·기념행사나 다른 기관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승인하여 시행하는 정기공연 외의 모든 공연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예술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총괄운영자 1명 및 단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총괄운영자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은 공개모집한다.

제4조(임무)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민을 위한 정기·수시공연 및 초청(교류)공연

2. 그 밖에 군수가 예술단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5조(단원 등의 위촉) ① 단원 등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예술단에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5호의 특별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단원 등의 연령) ① 단원의 위촉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② 총괄운영자의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원의 연령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

다.

제7조(위촉기간) ① 단원 등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총괄운영자는 두 차례만 재위촉 할 수 있다.

② 총괄운영자의 보궐임기는 전임 총괄운영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된 총괄운영자가 해임 및 사직하는 경우 총괄운영자가 위촉되기 전까지 단원 중 한 명이 전체 단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시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 등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9조(단원 등 해촉) 군수는 위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원 등이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사람
2. 예술단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4. 제4조에 따른 공연 출연 또는 주어진 임무를 불참·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5. 정기평정 결과 80점 미만인 사람
6. 그 밖에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0조(근무방법) ① 총괄운영자는 주 3일, 월 12일 이상 출근하여 매회 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주 2일, 월 8일 이상 출근하여 매회 3시간 이상 연습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일 등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단원 등은 근무시간 내 사적출연 및 외부강의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단원 등의 복무) ① 단원 등은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 맡은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복무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정기평정 및 채점) ① 군수는 단원 등의 자질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근무평정 등을 실시한다.

② 근무평정은 채용 기준일 1년 도래 시점에 실시하며, 단원의 경우 필요시 실기평정을 할 수 있다.

③ 정기평정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 및 실기평정 등을 위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하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역량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해 전형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당연직 위원에 부단장 및 총괄운영자를 포함한다.

제14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 실기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형의 시기, 인원, 방법, 구비서류 및 채점 기준 등에 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급여 등) 단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제16조(공연료) ① 군이 주관하는 행사는 무료공연으로 한다.

② 다른 기관·단체에서 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려면 별표 2에 따른 공연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공연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예술단과의 교류(협연)공연 시 비용부담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③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7조(예산)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정한다.

제18조(실비보상) 전형심사에 참석하는 외부위원 및 공연에 출연하는 객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공연료)제2항의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단원 등의 위촉기간은 그 잔여기간까지 유효하다.

[별표 1]

기본급 및 제수당 지급표(제15조 관련)

구 분	기본급 (월)	공연수당 (정기공연 등 1시간 이상)	비 고
총괄운영자	3,200,000원 (6급10호봉 상당)	○근무일 공연 - 150,000원 ○비근무일 공연 - 300,000원	
단원	1,320,000원	○근무일 공연 - 100,000원 ○비근무일 공연 - 200,000원	

※ 1시간 미만 공연 시, 공연수당의 50% 지급 및 관용차량(관외공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6급 이하)에 따른 교통비 및 식비 지급

[별표 2]

공연료 납부기준(제16조제2항 관련)

구 분	공 연 료	비 고
관 내 (1명 기준/ 시간당)	100,000원 ~ 300,000원	
관 외 (1명 기준/ 시간당)	200,000원 ~ 1,000,000원	

※ 공연시간은 30분 이상인 경우에만 1시간으로 산정하며,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위 기준 50%를 부담한다.

[예시: 1시간40분(2시간) / 1시간20분(1시간) / 20분(1시간 비용의 50%)]

※ 본 공연료에는 차량, 단원숙식 등 일체 소요경비가 포함된다. 다만 공연에 따른 무대설치비 등은 초청기관(단체)에서 부담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하 동 군 수 하 승



하동군 조례 제 2634 호

하동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하동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를 “하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하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회 의원이 군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하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하동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 개발 등에 대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 구성) ① 연구단체는 각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포

함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유사한 연구주제는 지양하여야 하며, 제2조제3호의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중복 또는 유사한 내용의 용역은 시행할 수 없다.

②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 등록) 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하동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등의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제3조제1항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연구활동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의회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 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간 예산액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액의 10% 이내로 한다.

1.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비용
2.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 활동 여비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에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연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0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 범위 내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말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활동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단체 해산)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연구계획서

「하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주제						
		목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		(별 침)						
소요 예산	총액	금	원 (₩)					
	산출내역	※ 세부내역 별첨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하동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변동보고서

「하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변 동 의 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 동 일 자	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하동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하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단 체 명		
연 구 내 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결과	(별 첨)
정 책 개 발 비	수 령 액	금 원 (₩)
	집 행 액	금 원 (₩)
	잔 액	금 원 (₩)
연구단체 활동비	수 령 액	금 원 (₩)
	집 행 액	금 원 (₩)
	잔 액	금 원 (₩)
특 기 사 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 붙 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 2. 정책개발비 및 연구단체지원비 사용내역서 각 1부
-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하동군의회 의장 귀하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하 동 군 수 하 승 결



하동군 조례 제 2635 호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정활동비”를 각각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10조 중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용을 위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본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표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지 급 내 액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 조 활 동 비
의 원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 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의정활동비</u>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u>의정활동비</u>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p> <p><u><신 설></u></p>	<p>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p> <p>① ----- ----- ----- <u>의정활동비, 월정수당</u> 및----- ----- ----- ----- -----<u>의정활동비, 월정수당</u> 및 -----.</p> <p>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 <u>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u> <u>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u> <u>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u> <u>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u> <u>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u> <u>는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u> <u>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u> <u>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u> <u>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u> <u>수한다.</u></p> <p>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u>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u> <u>법」 또는 「하동군의회 회의</u> <u>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u> <u>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u> <u>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u> <u>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u></p>

<신 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하동군 지방공
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였을 경우
-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
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
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
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
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
-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
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10조(준용) -----
----- 「하동군의회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연장허가(승인) 고시

하동군 제2024 - 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3. 15.

하 동 군 수

- 허가(승인)번호 : 2014-3호
- 허가연월일 : 2024. 3. 15.
- 점·사용의 목적 : 육상해수양식어업에 따른 해수인수관 설치
- 점·사용의 장소 :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338번지 일원 공유수면
-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위 치	점용내역	점용기간	점용목적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338번지 일원 공유수면	해수인수관 A=1.5㎡, 50mm	2019.3.18 ~ 2034.3.17	해수인수관 설치

-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강석현
- 주 소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239

하동군 공고 제 513 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2024. 1. 1.시행)으로 종전 증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 · 세목별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 인상(안 제5조)

- 1매당 세액 30만원을 1매당 세액 45만원으로 상향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하동군(참조 : 재정관리과, 전화 880-2272, FAX 880-2279, e-mail(huiya@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4-4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동군에서 추진하는 「경전문화공유마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나, 거소불명·폐문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 경전문화공유마을 정비공사
2.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광평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4. 공시송달 사유 : 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우편 송달 불가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공고기간 : 2024. 3. 20.(수) ~ 2024. 4. 5.(금) [17일간]
7. 공고내용
 - 협의장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본관 1층 도시과
 -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따름
 - ※ 미 협의 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진행
 -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사본 1부, 인감증명서 2부, 토지대장 1부, 주민등록초본(전 주소 포함) 1부.
9. 기 타
 - 보상협의 요청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하동군청 도시과(☎055-880-2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토 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1	하동읍내리	1016	대	466	458	제*	경남 양산시 동면 금*16길 100, 30*동 1*01호	